

ハングル

개 호 보 험 제 도

나 고 야 시

2021년도

개호 보험 제도

본 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는 전후 베이비 블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레이와 7년)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 외에 독거 노인이나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인지증의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의 상황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개호 문제를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재원>

재택서비스의 경우

| 공비 50% | 국가 20% | 국가의 조정 교부금 5%*2 | 도도부현 12.5% | 시정촌 12.5% |
|------------|---------------------------------------|--------------------------------------|---------------|--------------|
| 보험료 50% | 제 1호 피보험자 (65세이상인 분)의 보험료 23%*1 | 제 2호 피보험자 (40~64세인 분)의 보험료 27% | | |

시설 등 서비스의 경우

| 공비 50% | 국가 15% | 국가의 조정 교부금 5%*2 | 도도부현 17.5% | 시정촌 12.5% |
|------------|---------------------------------------|--------------------------------------|---------------|--------------|
| 보험료 50% | 제 1호 피보험자 (65세이상인 분)의 보험료 23%*1 | 제 2호 피보험자 (40~64세인 분)의 보험료 27% | | |

1 기관

본 시에서는 구청의 복지과가 창구가 되어, 피보험자 자격, 요 개호인정 등, 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 지소 구민 복지과에서도 피보험자 자격, 요 개호인정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신청 우편접수 및 인정 통지 발송 등의 업무는 인정 사무센터에서 집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介護保険制度

本市を始めとする都市部においては、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となる2025年（令和7年）までに、他の地域と比較して急速に高齢化が進み、特に75歳以上の高齢者のか、ひとり暮らし高齢者や、高齢者のみで構成される世帯、認知症の高齢者が急増す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

介護保険制度は、介護を必要とする方の状況や家族の希望に応じて保健・医療・福祉のサービスを総合的に提供し、老後の最大の不安要因である介護の問題を社会全体で支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介護保険の財源>

○ 在宅サービスの場合

| 公 費 5 0 % | 国 20% | 国の調整交付金 5%※2 | 都道府県 12.5% | 市町村 12.5% |
|----------------|-------------------------------|------------------------------|---------------|--------------|
| 保 険 料 5 0 % |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の保険料 23%※1 |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の保険料 27% | | |

○ 施設等サービスの場合

| 公 費 5 0 % | 国 15% | 国の調整 交付金 5%※2 | 都道府県 17.5% | 市町村 12.5% |
|----------------|--------------------------------|-------------------------------|---------------|--------------|
| 保 険 料 5 0 % |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 の保険料 23%※1 |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 の保険料 27% | | |

1 機関

本市では、区役所福祉課が窓口となり、被保険者資格、要介護認定等、保険料の賦課徴収等の業務を行っており、支所区民福祉課においても被保険者資格、要介護認定申請の受付等の業務を行っています。

なお、更新申請の郵送受付や認定通知の発送などの業務は、認定事務センターで集約して行っています。

2 피보험자(개호보험에 가입하는 분)

피보험자에는 제 1 호 피보험자와 제 2 호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 | |
|------------|--|
| 제 1 호 피보험자 | 본 시에 주소를 소유하는 65 세이상인 분 |
| 제 2 호 피보험자 | 본 시에 주소를 소유하는 40~64 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

나고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은나고야시 개호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하신 분
- 적격한 재류자격을 소유하고, 3 개월을 넘어서 일본에 체류 예정인 분(입국관리국이 인정한 분. 단, 대사관원 등 공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 40 세 이상인 분 (단, 65 세 미만인 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체류기간이 3 개월이하라도 생활 실태로 봐서 3 개월을 넘어서 체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피보험자증은 제 1 호 피보험자 전원과, 제 2 호 피보험자 중에 보험증의 교부 신청하신 분 및 요 개호인정 등의 신청을 하신 분에게 교부됩니다.

2 被保険者（介護保険に加入する方）

被保険者には第1号被保険者と第2号被保険者があります。

| | |
|---------|------------------------------|
| 第1号被保険者 | 本市に住所を有する65歳以上の方 |
| 第2号被保険者 | 本市に住所を有する40～64歳の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 |

名古屋市にお住まいの外国人の方で次の要件に全てあてはまる方は、名古屋市の介護保険に加入していただきます。

- 住民登録をされている方
- 適格な在留資格を有し、3ヶ月を越えて日本に滞在予定の方（入国管理局認めたもの。ただし、大使館員など公用ビザを持っている人は除きます。）
- 40歳以上の方（ただし、65歳未満の方については、日本の公的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なお、在留期間が3ヶ月以下であっても生活実態から3ヶ月を越えて滞在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方は、加入していただきます。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お届けください。

被保険者証は、第1号被保険者全員と、第2号被保険者のうち保険証の交付申請のした方及び要介護認定等の申請をした方に交付します。

3 개호 보험료

(1)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보험료 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서 15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각 년도에 납부하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금액

| 보험료 단계 구분 | | 보험료(연액) |
|-----------|--|---|
| 제 1 단계 | 생활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 또는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서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 19,928 엔 (기준액×0.25) |
| 제 2 단계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19,928 엔 (기준액×0.25) |
| 제 3 단계 | |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어 120 만엔 이하인 분 31,884 엔 (기준액×0.4) |
| 제 4 단계 | |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120 만엔을 넘는 분 55,797 엔 (기준액×0.7) |
| 제 5 단계 |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며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음 |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67,753 엔 (기준액×0.85) |
| 제 6 단계 | |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는 분 79,709 엔 (기준액) |
| 제 7 단계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80 만엔 미만인 분 83,695 엔 (기준액×1.05) |
| 제 8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80 만엔 이상 125 만엔 미만인 분 87,680 엔 (기준액×1.1) |
| 제 9 단계 | |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25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인 분 99,637 엔 (기준액×1.25) |
| 제 10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상 290 만엔 미만인 분 119,564 엔 (기준액×1.5) |
| 제 11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290 만엔 이상 400 만엔 미만인 분 135,506 엔 (기준액×1.7) |
| 제 12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400 만엔 이상 540 만엔 미만인 분 151,448 엔 (기준액×1.9) |
| 제 13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540 만엔 이상 700 만엔 미만인 분 167,389 엔 (기준액×2.1) |
| 제 14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7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분 183,331 엔 (기준액×2.3) |
| 제 15 단계 |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상인 분 199,273 엔 (기준액×2.5) |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0 엔미만의 끝수를 버린 금액이 됩니다.
- 연금수입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합계 소득금액이란 전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1 년간의 연금소득, 급여소득, 사업소득, 토지·건물 등이나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또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된 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또한, 시정촌민세 과세자(제 7 단계~제 15 단계)는 급여소득과 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의 합계액에서 10 만엔을 공제하고 시정촌민세 비과세자(제 2 단계~제 6 단계)는 급여소득금액(급여소득과 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 양쪽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조정 공제 전 금액)에서 10 만엔을 공제합니다.

3 介護保険料

(1)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の保険料

保険料の額は、所得などに応じて15段階となっています。低所得の方の負担が重くならないように配慮されています。

令和3年度から令和5年度の各年度に納めていただく保険料は次のとおりです。

ア 保険料額

| 保険料段階区分 | | 保険料（年額） |
|---------|---|-----------------------|
| 第1段階 | 生活保護等を受けている方、又は老齢福祉年金受給者で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の方 | 19,928円 (基準額×0.25) |
| 第2段階 |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 19,928円 (基準額×0.25) |
| 第3段階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 | 31,884円 (基準額×0.4) |
| 第4段階 |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を超え120万円以下の方 | 55,797円 (基準額×0.7) |
| 第5段階 | 本人が市町村民税非課税で同じ世帯に市町村民税課税者あり | 67,753円 (基準額×0.85) |
| 第6段階 |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方 | 79,709円 (基準額) |
| 第7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80万円未満の方 | 83,695円 (基準額×1.05) |
| 第8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80万円以上125万円未満の方 | 87,680円 (基準額×1.1) |
| 第9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125万円以上200万円未満の方 | 99,637円 (基準額×1.25) |
| 第10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200万円以上290万円未満の方 | 119,564円 (基準額×1.5) |
| 第11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290万円以上400万円未満の方 | 135,506円 (基準額×1.7) |
| 第12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400万円以上540万円未満の方 | 151,448円 (基準額×1.9) |
| 第13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540万円以上700万円未満の方 | 167,389円 (基準額×2.1) |
| 第14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700万円以上1,000万円未満の方 | 183,331円 (基準額×2.3) |
| 第15段階 |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1,000万円以上の方 | 199,273円 (基準額×2.5) |

- 実際に納めていただく保険料は10円未満を切り捨てた額になります。
-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 合計所得金額とは、前年の1月から12月までの1年間の年金所得、給与所得、事業所得、土地・建物等や株式等の譲渡による所得などを合計した金額です。なお、土地・建物等の譲渡所得に係る特別控除が適用される場合は、この控除額を差し引いた金額となります。また、市町村民税課税者（第7段階～第15段階）においては、給与所得と年金収入に係る所得の合計額から10万円を控除し、市町村民税非課税者（第2段階～第6段階）においては、給与所得金額（給与所得と年金収入に係る所得の双方を有する場合に適用される所得金額調整控除前の金額）から10万円を控除します。

나 납부 방법

노령·퇴직·유족·장애인금 중 하나라도 연액 18 만엔 이상 수급하고 계신 분은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 이외인 분은 계좌이체(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납부(보통징수)합니다.

다 보험료 납부의 유예·감면

재해를 당해 주택 등이 현저하게 손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장기입원 하는 등으로 인해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개호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상담하십시오.

라 미납자에 대한 조치

지정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압류를 위해 근무처에 대한 급여조사 등의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산 압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호보험 급부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를 받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급부가 후일 환급됩니다.

○ 보험료를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해도 보험료 급부 환급이 일시 중지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인상되어(※), 고액개호 서비스비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부담 10% 또는 20%인 분 → 30%

이용자 부담 30%인 분 → 40%

イ 納付方法

老齢・退職、遺族、障害年金のうちいずれか1つでも年額18万円以上受給されている方は、年金から天引き（特別徴収）します。特別徴収以外の方は口座振替（自動払込）または納付書により納付（普通徴収）していただきます。

ウ 保険料の納付の猶予・減免

災害により住宅などに著しい損害を受けたことや、生計を支えている方が長期間入院したことなどにより、保険料の納付にお困りの方は、申請により保険料の納付が猶予または減免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ご相談ください。

エ 未納者に対する措置

指定期限までに保険料をお支払いいただけない場合は、地方税の滞納処分の例によつて、差押えのために勤務先への給与調査等の財産調査が行われ、財産の差押え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また、特別な事情もなく保険料を1年以上納めないと、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に、納めていない期間に応じて以下のように介護保険の給付について制限を受けます。

なお、このような措置を受けても保険料の支払義務はなくなりません。

○ 保険料を1年以上納めないと

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費用の全額をいったん利用者が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区役所に申請すると、保険給付が後日払い戻されます。

○ 保険料を1年6か月以上納めないと

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費用の全額をいったん利用者が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区役所に申請しても保険給付の払い戻しが一時差し止められ、納めていない保険料に充て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 保険料を2年以上納めないと

納めていない期間に応じて、利用者負担が引き上げられ（※）、高額介護サービス費等も支給されません。

※ 利用者負担1割または2割の方→3割

利用者負担3割の方→4割

(2) 제2호 피보험자 (40~64세인 분)의 보험료
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매달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불합니다. 또, 세대주가 세대원의 뜻까지 합쳐서
지불합니다.

나 건강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는 분
매달 의료보험료와 아울러 지불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40~64 세의
피보험자가 분담하여 지불합니다.

(2)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の保険料

ア 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

毎月の国民健康保険料と合わせて支払います。また、世帯主が世帯員の分も合わせて支払います。

イ 健康保険や共済組合などに加入している方

毎月の医療保険料と合わせて支払います。また、被扶養者の保険料は40～64歳の被保険者で分担して支払います。

4 개호 서비스

(1)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요 지원·요 개호 인정을 받은 다음과 같은 분입니다. 이 인정에는 요 지원 1·2 와 요 개호 1~5 의 7 가지 구분이 있어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토대로 각 구에 설치된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판정을 실시합니다.

| | |
|------------|---|
| 제 1 호 피보험자 |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질병이나 부상 등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개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
| 제 2 호 피보험자 | 뇌혈관질환이나 관절류머티즘 등, 가령으로 인한 16 종류의 질병에 따라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

★ 요 개호 인정 등의 신청

신규 신청·구분 변경 신청 접수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가 창구가 됩니다. 간접 신청 접수는 개호 인정 사무센터로 우송해서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이키이키 지원센터나 지정 재택개호지원사업자, 개호보험시설 등에 신청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 신청에 필요한 것
 -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 40~64 세인 분(제 2 호 피보험자)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2) 개호 서비스 등의 내용

개호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 재택계 서비스와 시설·거주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택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요 개호자는 거액 개호 지원사업자에게 요 지원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로부터 서비스계획(케어 플랜)을 작성받아야만 합니다.

★ 이키이키 지원센터(지역포괄지원센터)란

이키이키 지원센터는 고령자의 신변 상담창구로서 지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키이키 지원센터에는 보건사·사회복지사·주임개호지원전문원 등이 배치되어 있어 요 지원인정자의 케어 매니지먼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介護サービス

(1) 介護サービス等を利用できる方

介護サービス等を利用できる方は、要支援・要介護の認定を受けた次の方です。この認定には、要支援1・2と要介護1～5の7つの区分があり、認定調査の結果と主治医の意見書をもとに、各区に設置された保健・医療・福祉の専門家からなる介護認定審査会で審査・判定を行います。

| | |
|---------|---|
| 第1号被保険者 | 介護や支援が必要と認定された方（病気やけがなど介護が必要になった原因にかかわらず、介護サービスの対象となります。） |
| 第2号被保険者 | 脳血管疾患や関節リウマチなど加齢に伴う16種類の病気により、介護や支援が必要と認定された方 |

★ 要介護認定等の申請

新規申請・区分変更申請の受付は、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が窓口となります。更新申請の受付は介護認定事務センターへの郵送でのご提出となります。

本人や家族だけでなく、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や指定居宅介護支援事業者、介護保険施設等に申請を代行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 申請に必要なもの

- 65歳以上の方（第1号被保険者）
介護保険被保険者証
- 40～64歳の方（第2号被保険者）
加入している医療保険の被保険者証

(2) 介護サービス等の内容

介護保険で利用できるサービスには、次の在宅系サービスと施設・居住系サービスがあります。在宅系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は、原則として要介護者は居宅介護支援事業者に、要支援者は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に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 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とは

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は高齢者の身近な相談窓口として地区ごとに設置されています。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には、保健師・社会福祉士・主任介護支援専門員などが配置されており、要支援認定者のケアマネジメント等を行っています。

재택관련 서비스

| | | |
|---------------|--------------------------------|--|
|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 1. 방문개호 (홈 헬프서비스) | 홈 헬퍼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를 원조합니다. |
| | 2.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홈헬퍼 등이 야간에 방문하여 개호를 합니다 |
| | 3. 방문 입욕개호 | 욕조를 실은 입욕차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 개호를 합니다. |
| | 4.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또는 진료의 원조를 합니다. |
| | 5. 방문 물리치료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리허빌리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 | 6.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 낮·밤을 통해서 방문개호와 방문간호가 연계하면서 단시간의 정기순회형의 방문과 수시의 대응을 합니다. |
| | 7. 재택요양관리지도 | 의사, 치과의,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실시합니다. |
| | 8. 복지용구 대여 | 휠체어, 특수침대나 슬로프 등의 복지용구 대여를 합니다. (요 개호도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
| | 9.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
| | 10. 주택 개수비의 지급 | 개호를 위한 소규모 주택 개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
| | 11. 생활 원조형 급식서비스 (시정촌 특별급부) | 이용자의 자택에 식사를 배달함과 동시에 본인의 안부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합니다. |
| 다니는 당일치기로 서비스 | 12.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입욕이나 식사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
| | 13.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 정원이 18인 이하의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입욕과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
| | 14.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 | 인지증(치매)인 분을 대상으로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입욕과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
| | 15. 통소 물리치료 (데이케어) | 시설 등에서 의사의 지시 아래,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등이 리허빌리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 서비스 단기입소 | 16. 단기입소 생활개호 | 단기간, 특별요양노인홈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개호를 합니다. |
| | 17. 단기입소 요양개호 | 단기간,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등의 개호를 합니다. |
| 기타 서비스 | 18.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 사업소로의 '출퇴근' 서비스 외에 '방문'이나 '숙박' 서비스를 편성하여 제공합니다. |
| | 19.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와 방문간호 등의 복수의 서비스를 조합해서 제공합니다. |
| | 20. 재택개호지원 | 개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이 개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요 개호인 분만 대상) |
| | 21. 개호예방지원 | 본인이나 가족과 더불어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요 지원인 분만 대상) |

在宅系サービス

| | | | |
|-------------------|-----|--------------------------|--|
| 家庭で利用するサービス | 1. | 訪問介護 (ホームヘルプサービス) | ホームヘルパーなどが家庭を訪問して、介護や家事の援助をします。 |
| | 2. | 夜間対応型訪問介護 | ホームヘルパーなどが夜間に訪問して介護をします。 |
| | 3. | 訪問入浴介護 | 浴槽を積んだ入浴車で家庭を訪問して、入浴の介護をします。 |
| | 4. | 訪問看護 | 看護師などが家庭を訪問して、看護や診療の補助を行います。 |
| | 5. | 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 | 理学療法士や作業療法士が家庭を訪問し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 |
| | 6. | 定期巡回・随時対応型 訪問介護看護 | 日中・夜間を通じて、訪問介護と訪問看護が連携しながら短時間の定期巡回型の訪問と随時の対応を行います。 |
| | 7. | 居宅療養管理指導 | 医師・歯科医・薬剤師などが家庭を訪問して、療育上の管理や指導を行います。 |
| | 8. | 福祉用具貸与 | 車いす、特殊寝台やスロープなどの福祉用具の貸し出しを行います。(要介護度によっては利用できないものもあります。) |
| | 9. | 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 | 指定を受けた事業者から福祉用具を購入したときに、その費用の一部を支給します。 |
| | 10. | 住宅改修費の支給 | 介護のための小規模な住宅改修について、その費用の一部を支給します。 |
| | 11. | 生活援助型配食サービス (市町村特別給付) | 利用者の居宅に食事を配達とともに本人の安否確認を行い、必要な場合には関係機関に連絡します。 |
| 日帰りで通う サービス | 12. | 通所介護 (デイサービス) |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
| | 13. | 地域密着型通所介護 | 定員が18人以下の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
| | 14. | 認知症対応型通所介護 | 認知症の方を対象に、デイサービス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
| | 15. | 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 (デイケア) | 施設などで、医師の指示のもとに、理学療法士や作業療法士などが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 |
| サ短期 サービス 入所 | 16. | 短期入所生活介護 | 短期間、特別養護老人ホームなどの施設に入所して、介護をします。 |
| | 17. | 短期入所療養介護 | 短期間、介護老人保健施設などの施設に入所して、医学的管理のもとでの介護をします。 |
| その他のサービス | 18. |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 事業所への「通い」サービスのほか、「訪問」や「泊まり」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て提供します。 |
| | 19. | 看護小規模多機能型 居宅介護 |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と訪問看護等の複数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て提供します。 |
| | 20. | 居宅介護支援 | 介護支援専門員(ケアマネジャー)が介護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ます。(要介護の方のみ対象) |
| | 21. | 介護予防支援 | 本人や家族とともに介護予防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ます。(要支援の方のみ対象) |

◆ 재택계 서비스 이용한도액

재택관련 서비스에는 요 지원·요 개호의 정도에 따라 이용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택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주택 개수비의 지급, 생활원조형 급식서비스(시정촌 특별급부)는 제외합니다.)

| | |
|--------|-----------------|
| 요 지원 1 | 1 개월당 5,032 단위 |
| 요 지원 2 | 1 개월당 10,531 단위 |
| 요 개호 1 | 1 개월당 16,765 단위 |
| 요 개호 2 | 1 개월당 19,705 단위 |
| 요 개호 3 | 1 개월당 27,048 단위 |
| 요 개호 4 | 1 개월당 30,938 단위 |
| 요 개호 5 | 1 개월당 36,217 단위 |

시설·거주관련 서비스

시설·거주관련 서비스는 요 개호 1~5로 인정된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인지증인 분이 소인원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호를 합니다.(요 지원 2인 분도 대상이 됩니다.) |
|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 지정을 받은 특정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에게 그 시설이 실시하는 개호 등의 서비스입니다.(요 지원 1·2인 분도 대상이 됩니다.) |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 정원 29명 이하인 특정시설에서 개호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
|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 항상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개호가 곤란한 거동불능 환자나 치매인 분에 대하여, 개호를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요 개호 3~5로 인정된 분이 대상이 됩니다. |
| 지역밀착형 개호 노인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 |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입니다. ※원칙적으로 요 개호 3~5로 인정된 분이 대상이 됩니다. |
| 개호 노인 보건시설 | 비교적 증상이 안정되어, 개호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하여, 간호·의학적 관리 하에 개호나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
| 개호의료원 |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와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
|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 장기에 걸친 요양이 필요한 분에게 간호·의학적 관리하에 개호와 필요한 의료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



공생형 서비스

방문개호·통소개호·지역밀착형 통소개호·단기입소 생활개소·예방전문형 방문서비스·예방전문형 통소 서비스는 공생형 서비스로서 자리매김되어 장애가 있는 분이 개호보험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 이용했던 장애복지사업소로부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케어매니저나 현재 이용하시는 사업소 등에 확인하십시오.

◆ 在宅系サービスの利用限度額

在宅系サービスには、要支援・要介護度ごとに利用限度額が設定されています。

(居宅療養管理指導、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住宅改修費の支給、生活援助型配食サービス（市町村特別給付）は除きます。)

| | | |
|------|--------|----------|
| 要支援1 | 1か月あたり | 5,032単位 |
| 要支援2 | 1か月あたり | 10,531単位 |
| 要介護1 | 1か月あたり | 16,765単位 |
| 要介護2 | 1か月あたり | 19,705単位 |
| 要介護3 | 1か月あたり | 27,048単位 |
| 要介護4 | 1か月あたり | 30,938単位 |
| 要介護5 | 1か月あたり | 36,217単位 |

施設・居住系サービス

施設・居住系サービスは、要介護1～5と認定された方が利用できます。

| | |
|------------------------------|---|
| 認知症対応型 共同生活介護 | 認知症の方が、少人数で共同生活を営めるよう介護をします。 (要支援2の方も対象となります。) |
| 特定施設入居者 生活介護 | 指定を受けた特定施設に入居している方に、その施設が行う介護などのサービスです。(要支援1・2の方も対象となります。) |
| 地域密着型特定施設 入居者生活介護 | 定員29人以下の特定施設において介護などを行うサービスです。 |
| 介護老人福祉施設 (特別養護老人ホーム) | 常に介護が必要で、家庭での介護が困難な寝たきりや認知症の方に対し、介護を行う施設です。 ※原則、要介護3～5と認定された方が対象となります。 |
| 地域密着型介護老人福祉施設 (特別養護老人ホーム) | 定員29人以下の小規模な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す。 ※原則、要介護3～5と認定された方が対象となります。 |
| 介護老人保健施設 | 比較的病状が安定し、介護や看護を必要とする方に対し、看護・医学的管理のもとでの介護やリハビリテーションなどを行う施設です。 |
| 介護医療院 | 長期療養のための医療と日常生活上の介護を一体的に行う施設です。 |
| 介護療養型医療施設 | 長期にわたる療養が必要な方に対し、看護・医学的管理のもとでの介護や必要な医療などを行う施設です。 |

◎ 共生型サービス

訪問介護・通所介護・地域密着型通所介護・短期入所生活介護・予防専門型訪問サービス・予防専門型通所サービスは、共生型サービスとして位置づけられ、障害のある方が介護保険を利用する場合、これまで利用していた障害福祉事業所から引き続き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ケアマネジャーへ現在ご利用の事業所などへご確認ください。

5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1)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 가능한 분(사업 대상자)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요 지원인정을 받으시거나 또는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개호·요 지원 인정 신청하시고 그 결과가 비해당이셨던 분이라도 별도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체크 리스트 기입

창구는 거주지 지역을 담당하는 이키이키 지원 센터 또는 거주지 구의 구청 복지과·지소 구민 복지과입니다.

창구에서 기본 체크리스트 용지를 배부해 드리니 기재된 질문에 대해 본인 상태에 해당하는 선택 항목을 선택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은 당일 결과가 압니다.

◆ 창구에서 필요한 것

- 65 세 이상인 분(제 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피보험자증

(2)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한 생활을 목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 1. 예방전문형 방문 서비스 |
| | 홈헬퍼가 자택을 방문해서 생활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개호 및 청소·세탁 등의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 2. 생활지원형 방문 서비스 |
| | 나고야시가 개최하는 개호나 생활지원기술을 배우는 연수를 종료한 분 등이 자택을 방문하여 자립을 목적으로 한 계획 아래 청소, 세탁, 조리 등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3. 지역 지원형 방문 서비스 | 지역의 활기찬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이나 전구 교환 등 일상생활에서 좀 곤란한 일에 대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 지원 수첩 교부 시 실비 300 엔이 필요합니다. |

5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

(1)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を利用できる方（事業対象者）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利用を希望される方は、要支援認定を受けていただくか、または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を受け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要介護・要支援認定の申請をされ、その結果が非該当だった方でも、別途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を受け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その結果、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対象者と判定された場合、こ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 基本チェックリストの記入

窓口は、お住いの地域を担当する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またはお住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支所区民福祉課です。

窓口で、基本チェックリストの用紙をお渡ししますので、記載された質問について、ご本人の状態にあてはまる選択肢を選んで記入していただきます。

「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は、当日に結果がわかります。

- ◆ 窓口で必要なもの
 - 65歳以上の方（第1号被保険者）
介護保険被保険者証

(2)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内容

介護が必要な状態になることを予防し、自立した生活を目指した生活支援のサービスを受けられます。

| | |
|-------------|--|
| 家庭で利用するサービス | 1. 予防専門型訪問サービス ホームヘルパーに自宅を訪問してもらい、生活機能の維持・向上を図るために、身体介護及び掃除・選択等の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
| | 2. 生活支援型訪問サービス 名古屋市が開催する介護や生活支援の技術を学ぶ研修を修了した方等に自宅を訪問してもらい、自立を目指した計画のもと、掃除・洗濯・調理等の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
| | 3. 地域支えあい型訪問サービス 地域の元気な高齢者を中心としたボランティアが自宅を訪問し、ゴミ出しや電球の交換等の日常のちょっとした困りごとに対する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 なお、地域支えあい手帳の交付にあたっては、実費300円が必要となります。 |

| | |
|---------------------|---|
| 당일치기로 다니는 서비스 | <p>4. 예방 전문형 통소 서비스</p> <p>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식사·입욕 등의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
| | <p>5. 미니 데이형 통소 서비스</p> <p>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자립된 생활을 목표로 '나고야 개호예방·인지증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능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
| | <p>6. 운동형 통소 서비스</p> <p>데이 서비스 센터나 노인보건시설,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전도방지나 허리다리 균력을 유지를 위해 자택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체조 등을 합니다.</p> |
| 서비스 생활지원 | <p>7. 자립지원형 배식 서비스</p> <p>자립된 생활이나 영양 개선 등을 위해 1일 1식을 한도로 자택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또한, 배달 시에 안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연락해 드립니다.</p> |

◆ 이용한도액

각 서비스(지역 지원형을 제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도가 있습니다. 요 지원 1·2 인 분이 개호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신 경우에는 개호 서비스 이용분도 포함한 합계 단위로 판단합니다.

| | |
|--------------|------------------|
| 요 지원 1·사업대상자 | 1 개월당 5,032 단위 |
| 요지원 2 | 1 개월 당 10,531 단위 |

| | |
|--|---|
| 日 帰 り で 通 う サ ー ビ ス | 4. 予防専門型通所サービス |
| |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等の施設で、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機能訓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
| | 5. ミニデイ型通所サービス |
| サ ー ビ ス 生 活 支 援 |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等の施設において、自立した生活を目指し、「なごや介護予防・認知症予防プログラム」を活用した機能訓練等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
| | 6. 運動型通所サービス |
| |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や老人保健施設、フィットネスクラブ等において、転倒防止や足腰の筋力保持のため、自宅でもできる軽い運動や体操等を行います。 |
| | 7. 自立支援型配食サービス |
| | 自立した生活や栄養改善等のため、1日1食を限度として、自宅に弁当の配達を行います。また、配達時に安否確認を行い、必要な場合には関係機関等に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 |

◆ 利用限度額

各サービス（地域支えあい型を除く）には、利用できるサービスの限度があります。
要支援1・2の方が、介護サービスもあわせて利用された場合は、介護サービス利用分も含めた合計単位で判断します。

| | |
|------------|-----------------|
| 要支援1・事業対象者 | 1か月あたり 5,032単位 |
| 要支援2 | 1か月あたり 10,531単位 |

6 일반 개호 예방 사업

(1)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

65 세 이상인 모든 분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단, 교재비나 숙박비 등 실비 부담이 별도 필요합니다.

| | |
|---------------------------------|---|
| 보건 센터 | 1.이키이키 교실 각 구의 보건 센터 등에서 인지증 예방이나 운동기능, 영양, 구강 등에 관한 개호예방교실이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보건 센터 |
| 복지회관 | 2.인지증 예방교실 각 구의 복지회관에서 인지증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하는 외에 인지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활동에 대해 배우는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복지회관 |
| 커뮤니티 센터 | 3.고령자의 활력 장수 추진 사업 커뮤니티 센터 등의 가까운 장소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취미 교실 등을 통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사회복지 협의회 |
| 휴양온천 흄 마쓰가시마 (2021년도말 사업 폐지) | 4.건강 이벤트·건강 숙박 플랜 (2021년도말 사업 폐지) 휴양 온천 흄 마쓰가시마에서 보건사 등에 의한 건강상담이나 건강담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동시에 건강 지도를 중심으로 한 숙박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나고야시 휴양온천 흄 마쓰가시마 전화 0594-42-3330 |
| 대학 | 5.나고야 건강 칼리지 건강 만들기 계기가 되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과학적 근거를 중시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건강 만들기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건강복지국 건강증진과 전화 972-3078 |
| 가까운 장소 | 6.고령자 살롱 고령자 분이 가까운 장소에서 부담없이 모여서 즐겁게 만나면서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역 주민 분 등이 고령자 살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 사회복지 협의회 |

6 一般介護予防事業

(1) 一般介護予防事業を利用できる方

65歳以上のすべての方

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ただし、教材費や宿泊費等の実費負担は別途必要です。

| | |
|----------------------------|---|
| 保健センター | 1. いきいき教室 各区の保健センター等において、認知症予防や運動機能、栄養、口腔等に関する介護予防教室や講演会等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保健センター |
| 福祉会館 | 2. 認知症予防教室 各区の福祉会館において、認知症予防のための運動を行うほか、認知症予防に役立つ知識や活動について学ぶ教室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福祉会館 |
| 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 | 3. 高齢者はつらつ長寿推進事業 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などの身近な場所において、レクリエーションや趣味の教室等を通じて仲間づくりのできるプログラムを行っ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社会福祉協議会 |
| 休養温泉ホーム松ヶ島 (令和3年度末事業廃止) | 4. 健康イベント・健康宿泊プラン（令和3年度末事業廃止） 休養温泉ホーム松ヶ島において、保健師などによる健康相談や健康講話を定期的に行うとともに、健康指導を中心とした宿泊プランを提供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名古屋市休養温泉ホーム松ヶ島 電話 0594-42-3330 |
| 大学 | 5. なごや健康カレッジ 健康づくりのきっかけとなるよう、大学と連携して科学的根拠を重視した、楽しく続けられる健康づくり講座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健康福祉局 健康増進課 電話 972-3078 |
| 身近な場所 | 6. 高齢者サロン 高齢者の方が、身近な場所で気軽に集まり、楽しくふれあいを深めて交流できる場所です。地域の住民の方などが高齢者サロン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社会福祉協議会 |

7 이용자 부담 등

(1) 이용자 부담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개호보수) 액의 10%(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을 부담합니다(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비용에 관해서는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 비율은 본인이나 동일 세대 65 세 이상인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식사와 거주비(체재비), 이발비·미용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 부담합니다.

| 부담 비율 | 기준(이하 ①②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
| 30% (※1) | ①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1)이 220 만엔 이상 ② 동일 세대의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수입(※2)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 단신 세대 340 만엔 이상 ┌ 2 명 이상의 세대 463 만엔 이상 |
| 20% | ①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1)이 160 만엔 이상 ② 동일 세대의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수입(※2)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 단신 세대 280 만엔 이상 ┌ 2 명 이상의 세대 346 만엔 이상 |
| 10% | 상기 이외인 분 |

- 상기 표에 관계없이 64 세 이하인 분,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및 생활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의 부담 비율은 10%입니다.

(※1) '합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 쪽을 참조.

(※2) 연금수입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액 개호 서비스 비용

동일 세대의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자 부담의 1 개월당의 합계가 일정한 상한을 넘을 때는 신청에 의해 고액 개호 서비스 비용으로서 그 초과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주택 개수에 관련된 부담, 시설에서의 거주비(체재비)와 식비 등은 고액개호 서비스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부담의 상한>

(1 개월당)

|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 상한액 | |
|--------------------------|---|---------------|
| 생활보호 수급자 등 | 15,000 엔 (개인) | |
| 세대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 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 연금수입 ^{※1} 과 합계 소득금액 ^{※2} 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 15,000 엔 (개인) |
| 과세소득 380 만엔 미만 | 24,600 엔 | |
| 과세소득 380 만엔 이상 690 만엔 미만 | 44,400 엔 | |
| 과세소득 690 만엔 이상 | 93,000 엔 | |
| | 140,100 엔 | |

※1 연금수입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합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 쪽을 참조.

7 利用者負担等

(1) 利用者負担

原則としてかかった費用（介護報酬）の額の1割（一定以上の所得のある方は2割または3割）を負担します（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の作成費用については、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負担割合は、本人や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所得に応じて決まります。ただし、食費や居住費（滞在費）、理美容代などの日常生活に要する実費は別に負担します。

| 負担割合 | 基準（以下①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 |
|------|--|
| 3割 | ①本人の合計所得金額（※1）が220万円以上 ②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年金収入（※2）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 〔単身世帯〕 340万円以上 〔2人以上世帯〕 463万円以上 |
| 2割 | ①本人の合計所得金額（※1）が160万円以上 ②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年金収入（※2）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 〔単身世帯〕 280万円以上 〔2人以上世帯〕 346万円以上 |
| 1割 | 上記以外の方 |

- 上記の表にかかわらず、64歳以下の方、市町村民税非課税の方や生活保護等を受けている方の負担割合は1割です。

※1 「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3ページを参照。

※2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2) 高額介護サービス費

同一世帯の利用者が支払った利用者負担の1か月あたりの合計が一定の上限を超えるときは、申請により高額介護サービス費としてその超えた額が支給されます。ただし、福祉用具の購入や住宅改修にかかる負担、施設における居住費（滞在費）や食費などは、高額介護サービス費の対象となりません。

<利用者負担の上限>

(1ヶ月あたり)

| 利用者負担段階区分 | 上限額 |
|----------------------|--|
| 生活保護の受給者など | 15,000円（個人） |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 | ・老齢福祉年金受給者 ・年金収入※1と合計所得金額※2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
| 課税所得 380万円未満 | 24,600円 |
| 課税所得 380万円以上 690万円未満 | 44,400円 |
| 課税所得 690万円以上 | 93,000円 |
| | 140,100円 |

※1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2 「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3ページを参照。

(3) 고액의료합산 개호서비스비

'고령개호서비스비'에 대해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세대내에서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해 7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액을 합산한 액에서 세대 부담한도액을 뺀 금액이 501엔 이상이 되는 경우 이 한도액을 넘은 분 중 개호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고액의료합산 개호서비스비'로서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개호합산 요양비'로서 의료보험자가 지급합니다.

(4) 거주비·식비의 이용자 부담

개호보험시설 및 단기입소 서비스 거주비(체제비)·식비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이나 세대 과세상황(별도 세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상황도 감안합니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단계가 설정되어 그 단계마다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한도액의 적용은 자산 요건으로서 예저금 등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부담 단계별 적용요건과 이용자 부담 단계>

(1 일당)

| 이용자 부담 단계 | | 예저금액 등 (*2) (부부의 경우) | 거주비(엔) | | | | 식비(엔) | |
|-----------------------|--|------------------------------|------------|-------------------|----------------|-----|----------|-------|
| | | | 유닛형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다상실 | 기존형 개인실 | 다상실 | 단기 입소 | 시설 |
| 제 1 단 계 | 생활보호 등 수급자 | 요건 없음 | 820 | 490 | 490 (320) | 0 | 300 | 300 |
|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의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1,000 만엔 이하 (2,000 만엔) | | | | | | |
| 제 2 단 계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및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80 만엔 이하 | 650 만엔 이하 (1,650 만엔) | 820 | 490 | 490 (420) | 370 | 600 | 390 |
| 제 3 단 계 ①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및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80 만엔 초과 120 만엔 이하 | 550 만엔 이하 (1,550 만엔) | | | | | 1,000 | 650 |
| 제 3 단 계 ②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및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120 만엔 초과 | 500 만엔 이하 (1,500 만엔) | 1,310 | 1,310 | 1,310 (820) | 370 | 1,300 | 1,360 |

*1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과 과세 연금수입액과 비과세 연금수입의 합계를 말합니다. 또한, 합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쪽을 참조.

*2 제 2 호 피보험자의 예저금액 등의 기준은 1,000 만엔입니다.

* 거주비의 () 안의 금액은 개호 노인복지시설과 단기 입소 생활개호를 이용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3) 高額医療合算介護サービス費

「高額介護サービス費」に加え、各医療保険（国民健康保険、被用者保険、後期高齢者医療制度）における世帯内で、1年間（毎年8月から翌年7月）の医療保険と介護保険の利用者負担額を合算した額から、世帯の負担限度額を差し引いた額が501円以上となる場合、この限度額を超えた分の内、介護保険にかかる部分を、「高額医療合算介護サービス費」として支給します。

なお、医療保険にかかる部分については、「高額介護合算療養費」として医療保険より支給されます。

(4) 居住費・食費の利用者負担

介護保険施設および短期入所サービスの居住費（滞在費）・食費については、本人の所得や世帯の課税状況（別世帯に配偶者がいる場合は、その課税状況も勘案します。）によって利用者負担段階が設けられ、その段階ごとに限度が決められます。

なお、限度額の適用にあたっては、資産要件として、預貯金等が一定額以下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利用者負担段階別の適用要件と利用者負担段階>

(1日あたり)

| 利用者負担段階 | | 居住費（円） | | | | 食費（円） | |
|---------|---|------------------------|---------------------|-----------|----------------|----------|-------|
| | 預貯金額等（※2） (夫婦の場合) | ユニット型個室 | ユニット型 個室的 多床室 | 従来型 個室 | 多床室 | 短期 入所 | 施設 |
| 第1段階 | 生活保護等受給者 | 要件なし | 820 | 490 | 490 (320) | 0 | 300 |
|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の老齢福祉年金受給者 | 1,000万円以下 (2,000万円) | | | | | |
| 第2段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80万円以下 | 650万円以下 (1,650万円) | 820 | 490 | 490 (420) | 370 | 600 |
| 第3段階①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80万円超120万円以下 | 550万円以下 (1,550万円) | 1,310 | 1,310 | 1,310 (820) | 370 | 1,000 |
| 第3段階② |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120万円超 | 500万円以下 (1,500万円) | | | | | 650 |
| | | | | | | 1,300 | 1,360 |

※1 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と課税年金収入額と非課税年金収入額の合計を指します。なお、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3ページを参照。

※2 第2号被保険者の預貯金額等の基準は、1,000万円です。

* 居住費の()内の金額は、介護老人福祉施設と短期入所生活介護を利用した場合の金額です。

(5)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거주비 조성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을 이용하는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분(예저금 등이 일정액(※1) 이하이며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 분(※2)에 대해 거주비(집세·광열수도비)를 조성합니다.

| 소득 요건 | 조성 액 |
|---|--------------------|
|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3)에서 본인의 전년 연금수입(유족 연금·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을 포함)과 합계 소득금액(※4)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 20,000 엔/월 (상한) |
|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3)에서 본인의 전년 연금수입(유족 연금,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을 포함)과 합계 소득금액(※4) 합계가 80 만엔을 초과하는 분 | 10,000 엔/월 (상한) |

(※1) 단신 1,000 만엔, 부부 2,000 만엔입니다.

(※2) 생활보호수급자, 중국잔류일본인 등 지원급부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3) 별도 세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도 판정에 포함합니다.

(※4) '합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이용자 부담의 감면

재해를 당해 주택 등에 현저한 손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부담 지불이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해 이용자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5) 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居住費助成

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を利用する一定の要件等を満たす方（預貯金等が一定額（※1）以下であり以下の要件に該当する方（※2））に対して、居住費（家賃・光熱水費）を助成します。

| 所得要件 | 助成額 |
|---|-------------------|
| 市町村民税非課税世帯（※3）で、本人の前年の年金収入（遺族年金・障害年金等の非課税年金を含む）と合計所得金額（※4）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 20,000円／月 (上限) |
| 市町村民税非課税世帯（※3）で、本人の前年の年金収入（遺族年金・障害年金等の非課税年金を含む）と合計所得金額（※4）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方 | 10,000円／月 (上限) |

（※1） 単身で1,000万円、夫婦で2,000万円です。

（※2） 生活保護受給者、中国残留邦人等支援給付受給者は除きます。

（※3） 別世帯に配偶者がいる場合は、その配偶者も判定に含みます。

（※4） 「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3ページを参照してください。

(6) 利用者負担の減免

災害により住宅などに著しい損害を受けたことや、生計を支えている方が長期間入院したことなどにより、利用者負担の支払いにお困りの方は、申請により利用者負担が減免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ご相談ください。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상담·문의처

| 명칭 | 전화번호 | FAX |
|--------|-----------------------------|-----------------------------|
| 지쿠사구청 | 7 5 3 - 1 8 4 8 | 7 5 1 - 3 1 2 0 |
| 히가시구청 | 9 3 4 - 1 1 9 5 | 9 3 6 - 4 3 0 3 |
| 기타구청 | 9 1 7 - 6 5 2 3 | 9 1 4 - 2 1 0 0 |
| 구스노키지소 | 9 0 1 - 2 2 6 9 | 9 0 1 - 2 2 7 1 |
| 니시구청 | 5 2 3 - 4 5 1 9 | 5 2 1 - 0 0 6 7 |
| 야마다지소 | 5 0 1 - 4 9 7 5 | 5 0 4 - 7 4 0 9 |
| 나카무라구청 | 4 5 3 - 5 4 2 0 433-2906 | 4 5 3 - 8 2 3 2 433-2074 |
| 나카구청 | 2 6 5 - 2 3 2 4 | 2 4 1 - 6 9 8 6 |
| 쇼와구청 | 7 3 5 - 3 9 1 4 | 7 3 1 - 8 9 0 0 |
| 미즈호구청 | 8 5 2 - 9 3 9 6 | 8 5 1 - 1 3 5 0 |
| 아쓰타구청 | 6 8 3 - 9 4 0 4 | 6 8 2 - 0 3 4 6 |
| 나카가와구청 | 3 6 3 - 4 3 2 7 | 3 5 2 - 7 8 2 4 |
| 도미타지소 | 3 0 1 - 8 3 7 6 | 3 0 1 - 8 6 6 1 |
| 미나토구청 | 6 5 4 - 9 7 1 5 | 6 5 1 - 1 1 9 0 |
| 난요지소 | 3 0 1 - 8 3 4 5 | 3 0 1 - 8 4 1 1 |
| 미나미구청 | 8 2 3 - 9 4 1 5 | 8 1 1 - 6 3 6 6 |
| 모리야마구청 | 7 9 6 - 4 6 0 3 | 7 9 3 - 1 4 5 1 |
| 시다미지소 | 7 3 6 - 2 1 9 2 | 7 3 6 - 4 6 7 0 |
| 미도리구청 | 6 2 5 - 3 9 6 4 | 6 2 1 - 6 8 4 1 |
| 도쿠시게지소 | 8 7 5 - 2 2 0 7 | 8 7 5 - 2 2 1 5 |
| 메이토구청 | 7 7 8 - 3 0 9 7 | 7 7 4 - 2 7 8 1 |
| 덴파쿠구청 | 8 0 7 - 3 8 9 7 | 8 0 2 - 9 7 2 6 |

개호에 관한 정보는 나고야시의 홈페이지『NAGOYA 개호네트』

개호보험 제도의 설명,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검색 등, 나고야시의 개호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igo-wel.city.nagoya.jp/view/kaigo/top>

발행 /나고야시 건강복지국 고령복지부 개호보험과 TEL 972-2537 FAX 972-4147

이 팸플릿은 2021년 8월 현재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성령 등의 공포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3.

이 팸플릿은 폐지 페퍼를 포함한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